

신용평가회사 투명성보고서

2018년말 현재

회 사 명 : 나이스신용평가(주)

대표이사 : 김 영 대 (인)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1에 따라 <붙임>과 같이 당사의 투명성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붙임>

2018년 투명성보고서

가. 일반현황

1) 지배구조 및 계열회사 현황

나이스신용평가(이하 “당사”)는 1986년 9월 전국종합신용평가(주)에서 출발하여, 1991년 1월 한국신용정보(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07년 11월 한국신용정보(주)에서 물적분할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9월 나이스신용평가(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물적분할 이후 주주 구성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10년 11월중 한국신용정보(주)가 분할, 합병을 거쳐 (주)NICE홀딩스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보고일 현재 당사의 지분은 (주)NICE홀딩스가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회사명	대표이사	사업목적	설립일
(주)NICE 홀딩스	최영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1986년 09월 11일

(주)NICE홀딩스는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에 대한 신용평가사업, 기업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사업, 자산관리 사업, CD/ATM 관리 사업, 신용카드거래승인/ 현금영수증발행에 관한 정보처리와 기기를 유통하는 사업, 서비스조사와 마케팅조사를 수행하는 리서치사업, 제조업 및 기타 사업이 있습니다.

[illegible]

이사회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직위	성명	주요 학력	주요 경력
대표이사 사장	김영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비상임이사 범우법인(유)을촌 고문 현 NICE 신용평가(주) 대표이사
비상근이사	심의영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감독서비스 총괄국장 KIS 정보통신(주) 대표이사 한국전자금융(주) 대표이사 현 NICE 평가정보(주) 대표이사
비상근이사	김명수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한국신용정보(주) 전략기획본부장 한국신용정보(주) 전략기획단장 (주)NICE 홀딩스 전략기획 1 실장 현 (주)NICE 홀딩스 CSO

직위	성명	주요 학력	주요 경력
감사	이현석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한국신용정보(주) 기획실장 한국신용정보(주) 경영관리본부장 (주)NICE 홀딩스 경영관리본부장 (주)NICE 홀딩스 정도경영실장 현 (주)NICE 홀딩스 C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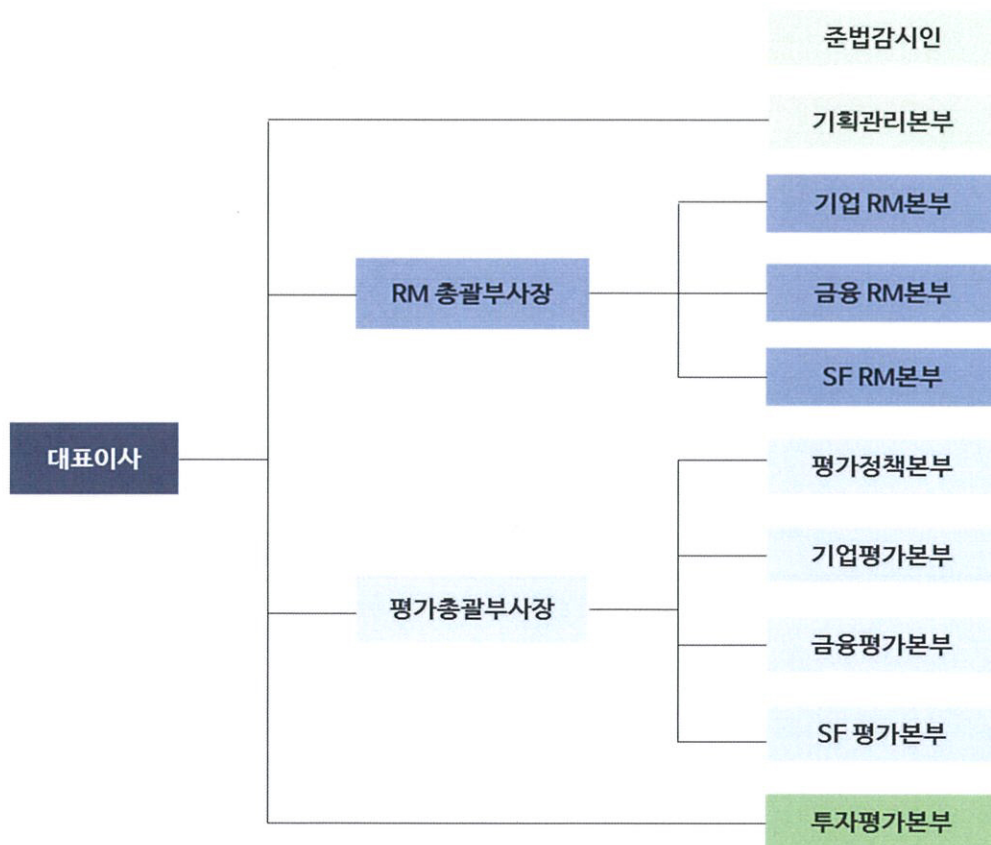
[2018년말 기준 국내 계열회사 현황]

법인명	업종	대표이사
(주)NICE 홀딩스	지주회사	최영
NICE 평가정보(주)	데이터서비스업	심의영
(주)NICE 디앤비	신용조회, 조사	노영훈
NICE 신용평가(주)	신용평가업	김영대
한국전자금융(주)	금융관련서비스	구자성
NICE 정보통신(주)	전자결제서비스	김용국
KIS 정보통신(주)	전자결제서비스	이윤희
NICE 알앤씨(주)	시장 여론 조사	이상호
(주)아이티엠반도체	반도체제조	나혁휘
NICE 아이피파트너스(주)	지적재산권관리	진동현
NICE 인베스트먼트(주)	경영컨설팅	김명수
NICE 인프라(주)	부동산임대업	김명수
NICE 지니데이터(주)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정선동
NICE 신용정보(주)	종합자산관리	이원명
NICE 피앤아이(주)	데이터서비스업	김기형
(주)오케이포스	POS 단말기 제조	김동우
NICE 씨엠에스(주)	경비, 경호서비스	성기동
무노스	소프트웨어개발	성기동
NICE 페이먼츠	컴퓨터프로그래밍	황윤경
(주)버드뷰	어플 개발	이용
(주)모먼츠컴퍼니	전자상거래	정윤진
(주)코니밤비니	패션잡화	이경준
(주)닥터스텍	화장품 기기	김준석
NICE 데이터(주)	소프트웨어 개발	이호제
(주)엘엠에스	자동차부품	오양섭
(주)리페이퍼	종이 및 판지 제조	윤철
에스투비네트웍(주)	경영컨설팅업	최영
NICE 에프앤아이(주)	금융서비스	정용선
NICE 에이앤아이(주)	금융서비스	김종훈
서울전자통신(주)	변압기제조판매	손종만
(주)지니텍스	전자제품제조	손종만
매그넨사모투자합자회사	금융업	NICE F&I(주)
디오홀딩스	금융업	정용선

2) 각 부서별 업무분장(등급산정, 등급리뷰, 방법론 승인 등) 내용

(1) 각 부서별 업무분장

2018년말 기준 당사의 부서는 평가조직(평가정책본부, 기업평가본부, 금융평가본부, SF평가본부), 영업조직(기업RM본부, 금융RM본부, SFRM본부), 부수업무조직(투자평가본부), 기획관리조직(기획관리본부), 준법감시조직(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조직에서는 신용평가업무 수행을, 영업조직에서는 부문별 영업업무를, 부수업무조직에서는 사업성평가를 포함한 업무를, 기획관리조직에서는 인사, 기획, 경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준법감시조직은 준법감시, 내부심사, 직무감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서명	주요 담당업무
준법감시인	준법감시, 내부심사, 직무감사, 검사대응 등
기획관리본부	기획, 재무, 인력개발, 구매, 공시 및 평가행정, 정보자산관리 등
기업 RM 본부	영업(영업기획, 수수료계약 체결 등), 매출채권 회수 등
금융 RM 본부	영업(영업기획, 수수료계약 체결 등), 매출채권 회수 등
SF RM 본부	영업(영업기획, 수수료계약 체결 등), 매출채권 회수 등
평가정책본부	평가기획, 등급정책수립, 신용등급 평정, 방법론 관리, 홍보 등
기업평가본부	금융투자상품, 기업 등 신용평가, 산업별 평가방법론 연구개발 등
금융평가본부	금융투자상품, 금융기업, 정부신용평가 등 신용평가, 산업별 평가방법론 연구개발 등
SF 평가본부	구조화금융상품 등 신용평가, 구조화금융 평가방법론 연구개발 등
투자평가본부	사업성평가, 가치평가, 기업진단 등

(2) 신용평가 프로세스별로 기재(2018년 12월말 기준)

평가프로세스 각 단계	담당조직 또는 부서	비고
평가요청 및 계약 체결	RM본부(기업/금융/SF)	: 평가조직 일절 미관여
실무진 구성 및 평가 개시	평가부서 부서장	: 해당 기업평가실장, 금융평가실장, SF평가실장
평가 기초자료 입수	평가부서 실무진	: 피평가기업에 요청/징구/수집
경영진 면담 및 현장방문	평가부서 실무진	: 피평가기업 협조 필요
분석 및 제시등급 결정	평가부서 실무진&부서장	: 실무진 분석결과를 해당 부서장이 점검하고 자체논의
평정회의 소집	평가부서 부서장	: 담당평가부서 부서장 제시등급 결정시 평정회의 소집
등급평정위원회 개최	평가담당자&평정위원	: 총 5인 참여(평가담당자+평정위원 4명)
등급결정	평정위원회(4인) 확대평정위원회(≥ 7인)	: 평정위원 만장일치로 제시등급 의결 : 평정위 부결 또는 주요 등급결정시 진행(의결요건 2/3이상)
등급통보	평가담당자	: 등급통보메일 이메일 발송
등급수용 or 재심신청	피평가기업, 평가담당자	: 1회에 한해 재심요청 가능
등급확정	평가담당자	: 등급수용 확인 또는 재심의결 완료시 등급확정
신용평가서 발행/공시	RM본부/기획관리본부	: 신용평가서 발행-RM본부, 공시업무-기획관리본부

주1) 상기 프로세스는 피평가기업이 직접 신용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평가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며, 투자자 등 제3자 요청평가의 경우, 상기 단계 중 피평가기업과의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평가 기초자료 입수”, “경영진 면담 및 현장방문”이 근원적으로 불가하며, “등급수용 및 확정”단계의 경우도 요청인에 대한 등급통보와 동시에 확정되며, 피평가기업의 재심절차는 미적용됨.

주2) 일반 평정위원회의 부결 이외에 확대평정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로서 대표적인 ‘주요 등급결정’으로는 “투기등급에서 투자등급으로 변경되는 경우”나 “투자등급 이상에서 등급기호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투자등급에서의 등급상향 요건 강화노력에 해당함.

[신용등급의 산정]

■ 신용등급의 제시

기업평가본부, 금융평가본부 및 SF평가본부의 담당 부서장은 요청인과 평가계약이 체결되거나 서면에 의한 평가요청이 이루어질 경우, 실무진을 구성하고 피평가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경영진 면담내용, 자체수집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해당 본부장의 승인을 득하여 등급에 대한 의견(제시등급)과 평정 관련자료를 등급평정위원회에 제시합니다.

기업평가본부 및 금융평가본부의 실무부서는 피평가대상인 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 등과 관련한 기업신용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보험금지급능력평가 등과 관련한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SF평가본부 실무부서는 SF (Structured Finance) 관련 금융투자상품, PF(Project Finance) 관련 금융투자상품, 펀드 등에 대한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합니다.

■ 신용등급의 산정

등급평정위원회는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론 등에 기초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신용등급 등(신용등급, 등급전망(Rating Outlook), 등급감시(Credit Watch))을 결정합니다. 일반 평정위원회는 평정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해서 평가정책본부(평가기준실) 전문평정위원과 평가실무담당 부서장을 포함한 평가부문 내 평가업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구성되며, 참여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신용등급 등을 결정합니다. 이때 평정위원장의 역할은 평가실무 부서와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평가QC실의 전문평정위원이 수행합니다.

확대평정위원회 소집은 기본적으로 일반 평정위원회에서 평정위원간 이견으로 제시등급이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못하고 신용등급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 추가 절차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당사는 보다 신중한 신용등급 결정을 위해 처음부터 확대평정위원회를 소집해서 등급을 결정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해 옴으로써 신용등급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4년 11월과 2015년 7월에는 내규 개정을 통해 장·단기 신용등급 등의 결정에 있어 투기등급에서 투자등급으로 등급상향 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투자등급 이상에서 등급기호가 변동 제시되는 경우 처음부터 의결 참여인원이 대폭 확장되는 확대평정위원회를 통해 신용등급이 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등급으로의 등급 상향 및 투자등급 내에서의 등급 변동 요건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확대평정위원회는 일반 평정위원회에 비해 강화된 성립요건[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기업평가 및 금융평가 본부장, 부서장, 등급평정위원회 해당 평정위원 등 당연직 확대평정위원의 2/3 이상 출석]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출석위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또한 확대평정위원회는 일반 평정위원회 대비 참여하는 평정위원의 구성이 상당 폭 확대되는 가운데, 확대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조직의 해당 본부장이 담당합니다.

[신용등급의 리뷰]

■ 신용등급의 사후관리 : 정기/수시평가

기업평가본부 및 금융평가본부 실무부서는 신용등급의 효력이 존재하는 동안 신용상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가운데, 매 결산일을 기준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합니다. SF평가본부는 유동화증권 발행일 이후 매 1년을 기준으로,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 신용평가의 경우 반기결산일을 기준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합니다.

또한 각 실무부서는 등급변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평가를 실시합니다. 한편, 고유 특성상 일회성 평가(One-Time Opinion)에 해당하는 제3자 요청평가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 당사의 판단에 따른 재평가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모니터링

평가정책본부는 신용등급 모니터링 대상범위를 효과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자본시장 내 지표를 활용하여 선정한 모니터링 대상을 신용평가 담당 실무부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에서의 부실예측정보 모니터링 지표로 BIR(Bond Implied Rating)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주식시장을 통한 부실예측정보 모니터링 지표로서 EIER(Equity Implied Expected Rate) 정보를 도입함으로써 신용등급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 내부심사

준법감시인은 기 부여된 신용등급과 그 평가과정의 전반적인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내부심사위원회는 정기심사, 수시심사를 수행하며, 내부심사결과에 따른 표창 또는 징계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내부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 준법감시인, 평가연구담당부서장(평가기준실장), 신용평가 담당 본부장 등 당연직 위원과

평가정책본부장, 평가업무경력 5년 이상인 평가기준실 소속직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정기심사 대상은 최근 6개월 사이 신용등급이 변동한 기업, 신용등급과 시장수익률 간의 괴리가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건 중에서 임의로 선정됩니다. 수시심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정하는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또는 신용등급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기업 등의 신용평가 건 중에서 대상을 선정합니다.

[방법론 승인 등 평가정책의 관리]

등급평정위원회와 별개로 운영되는 평가정책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신용평가에 관한 정책사항의 결정

평가정책위원회는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신용평가정책을 수립합니다. 또한 신규 신용평가서비스 실시 및 신용평가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신용평가 절차를 수립하고 개선합니다. 아울러 신용등급별 한계부도율을 설정하는 등 신용등급별 품질관리를 위한 내부정책을 수립합니다.

■ 신용등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

평가정책위원회는 신규 신용평가서비스 실시 등에 따른 신용등급 정의와 평가기준을 심의, 검토, 유지, 변경합니다. 또한 계량적 등급결정 모형 개정 등과 관련한 평가절차와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따른 평가방법론 심의, 검토, 유지, 변경, 승인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 평가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평가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평가정책본부장 등 당연직

위원의 3/4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장은 신용평가 담당(평가조직) 본부장 또는 부서장 중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가 맡는 게 원칙이나,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평가정책본부장이 맡습니다. 평가정책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는 정기회의와 등급결정기준 등 주요사안 심의에 대한 평정위원회의 요청이나 평가정책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수시적으로 소집하는 수시회의로 구분됩니다.

3) 각 부서별 인원현황 및 신용평가전문인력의 전문성(전공 및 경력현황 등) 관련 사항

[부서별 인원현황 (총인원 : 139명)]

(단위: 명)

구분		사장	부사장	본부장	부서장	부서원	소계
대표이사(임원실)		1					1
평가조직	신용평가총괄		1				1
	평가정책본부			1	3	10	14
	기업평가본부			1	5	21	27
	금융평가본부			1	2	12	15
	SF 평가본부			1	2	12	15
영업조직	RM 총괄		1				1
	기업 RM 본부			1	2	7	10
	금융 RM 본부			1	0	1	2
	SF RM 본부			1	1	1	3
부수업무조직	투자평가본부			1	2	12	15
경영관리조직	기획관리본부			1	3	28	32
	준법감시실			1		2	3

주) 직무대리 및 겸직의 경우, 상위 직명 기준으로 집계함

[신용평가전문인력(보직자 및 에널리스트: 총 68명)]

(단위: 명)

신용평가전문인력			
보직자 및 에널리스트: 총 68명	전공 현황	상경계열	62
		비상경계열	6
	자격증 현황	KICPA	19
		AICPA	2
		금융투자분석사	7
		CFA	9
		변호사	1

신용평가전문인력			
	학력	학사	36
		석사	32
	평가 경력 현황	~1 년 미만	7
		1~3 년 미만	4
		3~5 년 미만	2
		5~10 년 미만	25
		10 년 이상	30

주) 상기 전공은 최종학교 기준으로 집계

주) 복수의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에 대해 각각의 자격증을 기준으로 집계

나. 사업부문별·본부별·상품별 매출현황

1) 최근 3년간 신용평가부문과 비신용평가부문별, 각 본부별 및 상품별 매출액 비교공시

[신용평가부문과 비신용평가부문별 매출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신용평가	28,831	30,080	31,651
비신용평가	5,181	5,438	5,546
합계	34,012	35,518	37,197

주) 신용평가 매출에는 신용평가 부수업무인 기업신용평가, 보험금지급능력평가, 신용공여원리금 상환가능성 평가, 기타신용평가 등이 포함됨

[본부별 매출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기업 RM 본부	10,088	11,140	12,292
금융 RM 본부	7,734	8,410	9,340
SF RM 본부	11,386	10,915	10,434
투자평가본부	4,804	5,053	5,131
합계	34,012	35,518	37,197

[상품별 매출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유가증권	회사채	11,540	13,005	14,476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평가	기업어음증권(전자단기사채 포함)	4,598	4,630	5,034
	ABS(MBS,CBO 포함)	4,034	3,699	3,503
	ABCP(ABSTB 포함)	7,115	6,924	6,772
비금융 상품	기업신용평가	1,052	1,262	1,470
	보험금지급능력평가	132	110	204
	신용공여원리금 상환 가능성 평가 (Loan Rating, ABL 등)	235	328	179
	기타신용평가	125	121	12
합계		28,831	30,080	31,651

주) 상기 매출은 비신용평가 매출 합계금액이 제외된 수치임

다. 내부통제 관련 현황

1) 내부통제 관련 조직 구성현황, 역할 및 전문성

당사는 신용평가부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준법감시조직으로 준법감시인과 준법감시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내부통제체제 및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회사 내 준법감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관련 법규에 명기된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2018년말 기준 신용평가업무 15년 및 준법감시업무 3년 이상 경력자)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부서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2018년말 기준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으로는 내부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으로 수석연구원 2명(KICPA로서 신용평가업무 3년 및 준법감시업무 10개월 이상 경력자, 감사 및 준법감시업무 11년 이상 경력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에서는 주주총회를 통해 1인의 감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업무 및 감사업무 경력을 보유한 감사는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와 회계, 재산관리에 대한 감사,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서 감사에게 위촉한 업무 수행 등이 감사의 주요 직무로,

준법감시부서는 경영개선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직무감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내부통제 관련 조직 구성]

구분	준법감시인	감사
근거	자본시장법, 내부통제기준	상법, 정관
운영	이사회를 통해 1인의 준법감시인 선임 준법감시실(2인) 설치	주주총회를 통해 1인 선임
역할	내부통제기준상 기재된 역할 1.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2.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게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의 제출 요구 3. 신용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상시 감시.감독시스템의 구축.운영 4. 신용평가과정에서 이해상충을 관리하고 신용평가과정의 공정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리스크의 점검 5. 신용등급의 부여·제공·열람을 위한 방침 및 방법과 관련한 내부통제 준수여부 점검 6. 신용평가 및 평가방법과 관련한 불만, 이 기준 및 관련법규 등의 준수와 관련한 불만, 신용평가 담당직원 및 이용자가 제기하는 신용평가 관련 불만의 접수, 처리 및 보관을 위한 절차 마련 7.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및 감사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8. 이사회, 감사, 기타 주요 회의에 대한 참석 및 의견진술 9. 준법감시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이수 10.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관상 기재된 역할 1. 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사 2.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3.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 4. 필요 시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 요구

2) 내부통제 관련 내부규정 체계

당사는 신용평가업무 수행과 관련한 Code of Conduct(행동규범)을 마련하고 있으며, 신용평가 절차 및 신용평가 수수료 체계 등 신용평가와 관련한 주요 정책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객관성, 독립성, 일관성, 투명성, 신뢰성 등 신용평가업 영위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원칙의 준수를 위해 기본적인 덕목과 행동양식을 명문화하는 최상위 규정인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을 2006년 5월 제정한 이후, 국제증권감독기구(이하 “IOSCO”) 행동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개정 등을 반영하여 각각 2010년 1월 및 2013년 11월에 동 Code of Conduct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당사의 Code of Conduct는 IOSCO에 담긴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신용평가회사로서 당사가 확보하고자 하는 신용평가과정의 질과 성실성, 독립성과 이해상충 방지, 그리고 투자자, 피평가자 및 시장에 대한 의무 등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당사와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 시행세칙상 표준내부통제기준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통제기준에는 이사회 등 내부통제 조직 구성 원칙,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체제의 운영 원칙, 신용평가업무 행위 준칙 및 이해상충의 관리 등 주요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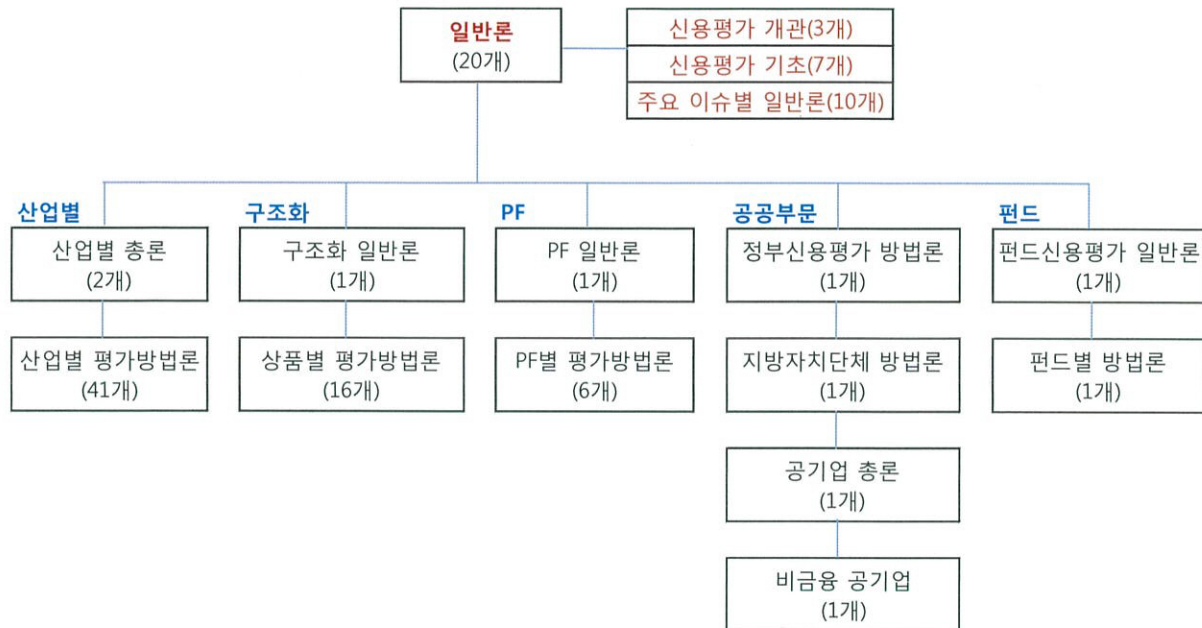
상기 Code of Conduct 및 내부통제기준에 근거하여 당사는 각종 규정 및 하위 내규를 마련하여 내부통제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준법감시부서는 신용평가업무의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 및 이해상충 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준법감시조직으로서 준법감시규정 및 세부지침에 근거하여 준법감시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당사의 모든 신용등급의 결정 권한은 내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용등급평정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에서는 신용등급평정위원회를 포함한 신용평가 관련 사항을 신용평가업무규정 및 신용평가업무세칙 이외에도 평가정책위원회운영지침, 신용등급평정위원회운영지침, 신용평가공시지침, 정기평정실시지침 등 성문화된 하위 내규를 통해 규정함으로써, 엄격한 신용평가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신용평가전문인력이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방법론 체계를 살펴보면, 당사의 신용평가방법론은 원칙적으로 [일반론-특수성 반영 각론]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용평가방법론 일반론]이 모든 신용평가에 대한 일반적 설명과 원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업 및 금융부문의 전통적인 채무증권의 구체적인 적용체계는 해당 [산업별 평가방법론]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영역별로 구분하여 평가 대상 자산별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 자산의 특수성을 크게 분류하면, 산업 및 금융부문의 전통적인 채무증권, 구조화증권(Structured Finance), PF(Project Finance) 및 기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 영역에 따라 신용평가방법론은 [일반론-산업별], [일반론-구조화 일반론-구조화 상품별], [일반론-PF 일반론-PF 상품별], [일반론-펀드 일반론-펀드별] 형태의 구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당사의 신용평가 방법론 위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12월말 기준 총 93개 방법론 보유



당사는 Code of Conduct 및 내규에 근거하여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판단과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존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을 인지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준법감시조직과는 별도로 이해상충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해상충관리위원회는 부서(본부) 간 이해상충여부의 심의, 임직원의 이해상충문제에 대한 심의, 기타 준법감시부서에서 상정한 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내부운영규정으로 이해상충관리위원회세칙 및 이해상충관리위원회 운영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신용평가 유효등급이 있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평가업무 등의 부수업무를 신규로 수주하고자 하는 경우, 본부 간 인사이동 및 기타 인사 조치가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직원이 회사 외 업무에 대한 겸직, 개인적 자문 및 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임직원(배우자 포함)의 지분증권 등의 거래가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준법감시인이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해상충위원회를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위원 3명 이상, 총 5명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기존 이해상충위원회를 통해 이해상충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 건들과 동종유형의 사례에 해당되는 비신용평가용역 등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이해상충에 대한 검토로 위원회 개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평가 담당직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용평가 과정에서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신용평가전문인력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르면, 이해관계가 있는 신용평가전문인력은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등급결정 과정에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등급평정위원회 소집 시 “평정위원회 참석자 확인사항”을 체크하게 하여 피평가기업의 이해관계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평가조직에 속한 신용평가전문인력이 신용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등급평정위원회 참석자가 이해상충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신용평가담당인력의 등급평정위원회 참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배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친척[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형제자매], 직전 근무기업, 편익수령 등으로 인한 이해상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신용평가전문인력이 해당사항에 대한 실시간 변동내역을 스스로 등록하고 분기별로 등록내용을 확인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직원복무지침을 통해서 이해상충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임직원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직원은 분기별 연 4회에 걸쳐서 증권보유 현황 및 거래내역을 준법감시부서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부서는 신고 시 제출된 자료내용 점검을 통해 해당 증권의 보유적정성 여부 및 행동규범의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평가 과정의 독립성을 위해 영업조직과 신용평가조직을 완전히 분리하여 운영하고, 조직 간 정보 및 인사의 교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조직의 임직원은 계약체결, 수수료 및 매출채권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는 영업조직에서 전담하도록 내부규정에 명시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3) 내부감사 관련 실시항목 및 대상 등

당사는 감사규정 및 감사세칙을 통해 감사의 직무수행 및 내부통제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실시하는 내부감사는 정기감사(연간 감사계획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수시감사(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부문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실시), 특별감사(대표이사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 일상감사(내규에 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내용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실시)로 구분되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는 감사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행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감사를 통해 평가조직과 영업조직 간 정보교류 차단, 평가조직과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기타 조직 간 정보교류 차단 등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내부통제기준 위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련 법규상 각종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 내용과 규제 취지 등에 대한 필요한 교육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현황 및 거래내역의 분기별 점검, 신용평가업무 수행절차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의 종류 및 대상]

구분	내용	주요 점검대상
정기감사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금융투자상품 신고내역 분기점검, 사후관리 등 신용평가절차 점검, 정기내부심사, 시재감사 등
수시감사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부문 또는 특정업무에 대해 실시	이해상충여부 점검, 수시내부심사 등
특별감사	대표이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기관의 요청 시 실시	해당사항 발생시 점검
일상감사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서류에 대한 사전감사 또는 사후감사	이해상충소지가 있는 해외출장, 내부통제기준 편익수수 관련사항 중 사전검토 대상,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 구매 및 경비지출의 결정 / 자산매각 등에 대한 사항 중 500 만원 이상건 또는 부사장 이상 전결사항, 50 만원 이상 점대성경비의 지출, 예금 또는 적금의 가입 등

4) 신용등급에 대한 내부심사 관련 절차 및 대상 등

당사는 기 부여된 신용등급과 그 평가과정의 전반적인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내부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내부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내부심사운영지침을 통해 심사대상의 선정, 심의권한의 내용과 범위, 심의자료의 작성, 제출 및 보관 등 신용평가업무규정 및 신용평가업무세칙에서 정한 내부심사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실시하는 내부심사는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로 구분됩니다. 정기심사는 기 평가대상 중 임의로 표본을 추출하여 신용등급 부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각각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반면, 수시심사는 채무불이행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급격히 변동한 경우 등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또한 당사는 관련 내규를 통해 내부심사 관련 징계건의 기준에 따른 징계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내부심사 종료 후 내부심사보고서와 심의록을 작성하여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내부교육 및 차기 평가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 신용평가 관련 문서 등의 기록.유지 정책

당사는 관계 법규와 내규에 따라 신용등급 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와 평정기록 관리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설비 및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스템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업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위해 신용평가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기밀정보 계약 또는 제공된 정보에 대한 기밀 유지절차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제공된 기밀정보는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피평가자가 제공한 정보는 신용평가 목적으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 계약관련 서류는 신용평가업무와 분리된 영업부서에서 전담하여 보관 및 관리하도록 내부 규정에서 명시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보 및 자료관리 지침 (내규)	
문서 등의 기록	기록 및 관리
	① 자료실에 보관된 평가사업관련자료(평가기초자료, 각종 평가보고서 및 평가연구자료)는 일반 자료와 구분하여 보관. ①의 2 회사의 임직원 및 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은 외부인에 한하여 자료실 보관자료 열람가능 (단, 평가사업관련 자료의 경우 업무 관련 임직원 이외의 자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 ② 임직원은 해당 자료의 담당자라 하더라도 열람 및 대출시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에 대한 담당자가 아닌 경우 대출 및 열람목적은 기록하여야 함 ③ 자료실은 회사 전체의 출입통제장치와는 별도의 잠금장치에 의해 보호됨
유지 정책	보존

	① 서면자료 - 원본자료가 서면인 경우 평가담당자는 자료생성날짜, 자료의 명칭 등을 통합평가시스템의 데이터 서버에 기록, 관리 - 자료실관리실무자는 자료 입고시 자료리스트와 실물을 대조, 확인하고 적절한 장소에 보관 ② 컴퓨터 파일의 보관 - 평가담당자는 정보를 보호하고 자료의 훼손, 도난, 인적사고 등에 의한 업무단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산파일 형태의 수취자료와 분석자료를 평정(본, 정기, 수시, 기타) 및 용역완료 후 즉시 통합평가시스템 또는 데이터 서버에 보관 ③ 기밀정보 - 회사는 기밀정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평가 관련 자료와 별도의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관리 - 기밀정보의 경우 평정위원회에 대한 파일형태의 제공은 금지되며, 기밀정보를 기재한 서면을 평정위원회에 제시할 경우에는 평정위원회 종료 후 즉시 수거하여 파쇄함. 또한 평정위원회 제시 목적 이외의 사본작성 및 전산 파일복사는 금지 - 기밀정보를 서면형태로 보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자료실 내에 별도의 잠금장치가 부착된 보관함에 인식표를 붙여 보관하여야 하며, 기밀정보의 입출고 과정에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번호별로 봉투 등에 넣어 보관하여야 함
	보존기간
	① 기업평가실, 금융평가실, SF평가실(신용평가서, 관리자료, 심의록, NICE CHECK POINT, CHECK List, 기타 관련 자료 - 등급소멸일로부터 10년

6) 최근 3년간 신용평가회사 대상 소송 제기 현황 및 민원·분쟁 접수 처리 현황

NH투자증권,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및 당사를 피고로 하여 제소된 매매대금반환사건 1건(원고: 중소기업은행)과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서울신용평가 및 당사를 피고로 하여 제소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의 소송 2건이 진행 중이며, 최근 3년간 민원·분쟁 접수 처리 건수는 6건입니다.

[소송제기 현황]

(단위 원)

해당연도	당사 원고		당사피고		전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6 년	0	0	1	1,000,000,000	1	1,000,000,000
2017 년	0	0	1	1,000,000,000	1	1,000,000,000
2018 년	0	0	3	24,107,559,455	3	24,107,559,455

[민원·분쟁 접수 처리 현황]

날짜	유형	접수	처리	비고
2018-06-01	기타	1	0	18.06.28 회신 완료. 18.12.31 기준 금감원 처리중 19.03.26 처리 완료
2018-06-04	기타	1	0	18.06.28 회신 완료. 18.12.31 기준 금감원 처리중 19.03.26 처리 완료
2018-06-05	기타	1	0	18.06.28 회신 완료. 18.12.31 기준 금감원 처리중 19.01.31 처리 완료
2018-06-07	기타	1	0	18.06.28 회신 완료. 18.12.31 기준 금감원 처리중 19.01.25 처리 완료
2018-06-19	기타	1	0	18.06.28 회신 완료. 18.12.31 기준 금감원 처리중 19.01.29 처리 완료
2018-06-20	기타	1	0	18.06.28 회신 완료. 18.12.31 기준 금감원 처리중 19.01.29 처리 완료
	합계	6	0	